*학부모의 절차적*

*보호에 관한 통지*

##

학부모님께:

학부모께서는 자녀(학생)가 특수교육 서비스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추천 또는 현재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음으로 이 절차적 보호 통지 (통지)를 받게 됐습니다. 일단 자녀가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되면, 교육구는 보통 두문자어 FAPE로 지칭되는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FAPE를 자녀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부모님과 같이 파트너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IEP 팀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자녀가 필요로 하는 독특한 사항들을 참작하여 [IEP](#_Individualized_Education_Program)라고 하는 자녀를 위한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1]](#footnote-1) IEP는 자녀만이 독특하게 필요로 하는 사항에 맞춰진 교습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자녀가 의미있는 학습 향상을 할 수있는 그리고 연령에 맞는 적절한 성장 발육의 기대에 따른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충분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포함해야만 합니다. 자녀를 위해 작성된 모든 특수교육 서비스는 학부모에게 무료로 공공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주 공립교육 제도내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매사추세츠 교과과정 테두리 안에서 학업 기준에 의해 카버되는 학습 자료를 배울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는 또한 자비로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공립학교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 거주 장애학생들에게 FAPE를 받을 개별적 권리를 제공합니다.

**주법과 연방법은 모두**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격이 된다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를 결정할 경우에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기간 동안 학생이 FAPE 서비스를 받는 것을 보장하는 절차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교육법 중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규제를 받는 부분입니다. 법률의 세부 사항들은 자녀를 보호하고 또한 자녀가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보장 받도록 돕기 위한 의도로써 고안됐습니다. 자녀 학교의 가이던스 사무실, 매사추세츠 초중등 교육부 (DESE), 장애학생 학부모를 위한 기관들 그리고 특수교육을 위한 사조직들로부터 특수교육 절차에 관한 이해에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처로부터 받는 정보는 자녀가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학교와 파트너로 같이 일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DESE의 인터넷 Websites에는 부모님들과 교육구를 위한 광범위한 정보가 제공되있습니다. **DESE 웹싸이트 목록이** 본 통지서 끝 부분에 포함되있습니다.

본 통지서는 자녀의 특수교육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모님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보호는 교육구가 제안하는 사항을 (“통지서 수취”) 부모님이 인지하고 있고, 교육구의 계획에 동의하며 (“부모의 동의 제공”) 그리고 교육구와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 (“적법 절차”)를 갖게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는 특정 규칙들 입니다. 절차적 보호는 법률로 본 문서에 요약되 있는 추가적인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저희들은 본 통지 내용이 자녀가 받는 교육에 학부모님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문서는, 학부모의 절차적 보호에 관한 통지,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합니다:

|  |  |  |
| --- | --- | --- |
| 1. [“사전 서면 통지”란 무엇이며 언제 그 통지를 받는가?](#_When_Do_Yo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쪽 |
| 1. “부모의 동의”는 무엇이며 교육구는 언제 부모의 동의를 요청해야 하는가?
 | . . . . . .  | 3쪽 |
| 1. 부모의 요청시 교육구는 반드시 자녀를 평가해야 하는가? Page 5
 | . . . . . . . . . . . . . . . . . . .  | 5쪽 |
| 1. “[독립 교육 평가”란 무엇인가?](#_What_is_a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쪽 |
| 1. 부모는 자녀의 학생 기록을 언제 열람할 수 있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쪽 |
| 1. [부모와 학교 사이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_How_Can_Parents)
 | . . . . . . . . . . . . . . . . . . . . . .  | 7쪽 |
| 1. 부모가 자녀를 사립학교에 입학시켰다면 부모의 책임은 무엇인가? Page 11
 | . . . . . . . . . . . . .  | 11쪽 |
| 1. 졸업후 자녀의 전환기에 관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야 하는가?
 | . . . . . . . . . . . . . . . . . .  | 12쪽 |
| 1. [학교는 장애학생을 어떻게 징계하는가?](#_How_May_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쪽 |
| 1. [관련 법률 및 규정 그리고 기타 유용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는가?](#_10.__)
 | . . . . . . . . . . . . .  | 14쪽 |

자녀가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정됐으면, 부모님은 본 통지를 매년 적어도 한번씩 받게 됩니다. 부모님은 또한 교육구로부터 또는DESE로부터 언제든지 통지서 사본을 요청하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DESE 웹싸이트 http://www.doe.mass.edu/sped/prb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1. 사전 서면 통지란 무엇이며 언제 그 통지를 받게 되는가? 34 CFR §300.503**

교육구는 자녀의 장애를 감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평가하며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는 자녀의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 또는 거절할 경우 부모님에게 반드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연방규정에서는 이를 “사전 서면 통지”라고 합니다. 서면 통지는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 교육구가 ***무엇을*** 제안 또는 거절하는지를 기술;
* 교육구가 ***왜*** 조치 취하는 것을 제안 또는 거절하는지에 대한 설명;
* 교육구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한 각 평가 절차, 사정, 기록 또는 보고서 등에 관하여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구가 조치의 제안 또는 거절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는 지를 설명; 그리고
* 자녀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팀이 고려한 기타 다른 옵션 및 거절한 옵션들에 대한 거절 이유들을 기술.

교육구는DESE가 개발하여 DESE웹싸이트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 양식 또는 동일한 정보가 포함된 그들 자체 양식을 이용하여 부모님께 이러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육구로부터 사전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교육구가 최초 평가 또는 재평가 할 것을 제안할 경우; 새로운 또는 수정된 IEP를 제안할 경우; 징계로 인한 교육 장소 배치의 변경 제안을 포함한 배치의 변경을 제안할 경우; 또는 특수교육 서비스의 종료를 제안할 경우.

또한, 자녀가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안된다고 교육구가 판정하거나 또는 자녀의 특수교육에 관한 평가 또는 규정에 관한 부모님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도 부모님은 통지를 받게 됩니다. 교육구로부터 받는 통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한, 부모님의 모국어 또는 부모님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모국어 또는 달리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문자 언어가 아닌 경우, 교육구는 통지 내용을 부모님에게 구두 언어로 또는 다른 수단 (예, 수화)으로 통역하여 부모님이 확실하게 그 통지 내용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또한 자녀의 특수교육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교육구가 처음으로 공공 건강보험 (매스헬스 또는 메디케이드)을 신청하기 전에 부모님께 서면 통지를 보내어 부모님의 동의를 – 또는 서면 허락 - 요청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사전 서면 통지와 본 절차적 보호 통지 사본을 함께 받거나, 또는 현 학년도 기간 동안에 본 통지를 이미 받으셨다면, 사본을 어떻게 또 다시 받으실 수 있는 지에 관한 정보를 받게 되며, 또한, 연방 및 주 특수 교육법에 관한 부모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모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연락처에 관한 정보도 받게됩니다.

## **2.** **부모의 동의란 무엇인가? 34 CFR §300.9와 603 CMR 28.07 (1)**

교육구는 부모님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특별 테스트 또는 특수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부모님께 연락하여 자녀을 위해 제안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후, 교육구는 학교의 제안에 부모님이 동의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실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동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발적으로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언제든지 그 동의를 취소 또는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동의를 철회하시고 싶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동의의 철회는 단지 미래에 있을 교육구의 조치에만 해당되며 이미 발생한 조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한가지 종류의 서비스 또는 활동에 동의를 거절하더라도 교육구는 그것을 자녀에게 제공되는 다른 서비스, 혜택 또는 활동을 거절하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모님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교육구가 자녀의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부분으로써 현존하는 데이타를 검토하기 전; MCAS와 같은 부모의 동의없이도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테스트 또는 다른 평가 또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분인 교실에서 수행되는 테스트를 자녀에게 제공하기 전; 또는 연방 또는 주정부 교육관리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전.

## **2.1 교육구는 언제 부모의 동의를 요청하는가?** **34 CFR §§ 300.300, 300.154와 603 CMR 28.07(1)**

교육구는 아래에 열거된 상황에서 부모님의 동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자녀의 특수교육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초 평가 허락**

교육구는 자녀가 특수교육 그리고/또는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초 평가를 부모님의 동의를 우선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평가 받도록 추천되었다면, 교육구는 수업일로 5일이내에 평가에 관한 부모님의 동의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최초 서비스에 대한 동의**

최초 평가가 완료된 후,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팀이 자녀가 특수교육 자격이 된다고 결정하면, IEP 팀은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그리고 교육 배치를 제안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IEP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육구가 처음으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자녀에게 제공하기 전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동의를 안하실 경우, 교육구는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제안 전체를 또는 일부분을 수락 또는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수락하신 IEP 또는 그 일부분은 수락하시는 즉시 시작되야 합니다.

**서비스, 교육 배치 또는 재평가 등의 변경**

자녀의 IEP에 일단 동의하셨으면, 자녀가 받는 서비스 또는 교육 배치를 변경하거나 재평가를 하기 전에 교육구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2]](#footnote-2) 부모님이 동의를 거절하신다면, 의견 불일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님은 교육구와의 적극적인 대화에 참여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전에 받던 서비스에 동의하셨다가 이제 그 동의를 취소하시고 받던 서비스에서 자녀를 철퇴시키고자 하신다면, 서면으로 그러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구는 학부모의 동의없이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또는 자녀를 재평가하기 위한 허락을 받기 위하여 특수교육항소국 (BSEA)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공공 건강보험 (매스헬스 또는 메디케어) 혜택 신청**

공공 건강보험으로 카버가 되는 학생들의 IEP에 포함되있는 몇몇 특수교육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교육구는 공공 건강보험 (매스헬스 또는 메디케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교육구가 처음으로 매스헬스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구는 우선 부모님에게 이러한 환불을 신청할 것을 알리는 서면 통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부모님의 자발적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수교육 서비스는 항상 무료로 부모님과 가족에게 제공된다; 부모님의 동의로 인해 자녀의 매스헬스 혜택 또는 자격에 어떠한 변경도 초래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매디헬스 신청을 위해 공유하게 될 자녀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다; 부모님의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부모님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자녀의 특수교육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에는 변경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부모님이 이사를 하시거나 자녀가 다른 교육구에 등록하게 되면, 새 교육구는 부모님의 동의를 다시 요청할 것입니다.

IEP 팀 구성원의 팀 회의 참석 면제

부모님이 회의 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신다면 IEP 팀 구성원들은 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팀이 참석하지 않는 팀 구성원의 담당 영역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라면, 그 구성원은 반드시 팀 회의 전에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팀 구성원의 불참석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 팀 구성원은 반드시 IEP 팀 회의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 **2.2 학생은 언제 동의 요청을 받는가 ?** **34 CFR §300.520과 603 CMR 28.07 (5)**

매사추세츠 주법에 의해 자녀는 18세가 되면 성인이 됩니다. **자녀가 18세가 되면**, 법원이 자녀를 위한 법적 보호자를 지명하거나 또는 자녀가 부모님과 결정권을 공유하고 싶다는 또는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결정을 부모님이 계속해서 해줄 것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한, 부모님이 부모로서 가졌던 모든 결정권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이전됩니다. 교육구는 자녀의 18세 생일 전 적어도 일년 전에 이러한 권리 이전이 갖게 되는 영향에 관하여 부모님과 자녀와 상담해야 합니다. 성인 장애자녀의 부모로서, 자녀가 자신의 교육에 관한 결정을 한다 해도, 부모님은 학교로부터 계속해서 모든 필요한 통지를 받고, 또한, 자녀의 교육 기록을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2.3 특수교육 대리부모는 언제 동의를 제공하는가 ?** **34 CFR §300.519 (g)와 603 CMR 28.07 (7)**

학생이 청소년가족부의 보호하에 있거나,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분이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또는 부모로서의 권리가 박탈됐을 경우, DESE는 반드시 이해상반이 없는 성인이 학생을 대신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성인을 특수교육 대리부모라고 합니다. DESE가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대리부모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단 지명이 되면, 특수교육 대리부모는 학생의 특수교육 문제에 있어서 부모와 똑같은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됩니다.

## **2.4 동의는 어떻게 철회할 수 있는가? 34 CFR §300.300(b)(4)와 300.9**

부모님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동의를 했다가 그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면, 그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모든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 또는 어떤 특정 서비스 또는 교육 배치, 또는 자녀의 매스헬스 또는 메디케이드 혜택에 대한 교육구의 이용 등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교육구가 부모님의 철회 편지를 받으면, 교육구는 부모님의 동의 철회에 따른 서비스 및 교육 배치에 있어서의, 만약 있다면, 변경 사항을 알리는 통지서를 부모님께 보낼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일단 모든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시면, 교육구는 더 이상 학생을 위해 FAPE를 제공하거나 IEP 회의를 하거나 또는 IEP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무가 없습니다. 교육구는 부모님의 동의 철회에 따른 결과로써 특수교육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학생의 기록을 수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 **3. 부모의 요청시 교육구는 반드시 자녀를 평가해야 하는가? 34 CFR §300.301 과**

## **603 CMR 28.04**

학생은 학생이 장애가 있는 지 그리고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리고 만약, 자격이 된다면, 필요하고 적절한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완전하며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의 발육에 관한 우려 또는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시면 자녀의 최초 평가를 요청 하십시오. 최초 평가를 받도록 요청하는 데는 특수 용어가 사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 평가 요청을 받으면, 교육구는 부모님께 통지를 보내 평가를 하기 위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구가 최초 평가를 거절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장애의 의심이 없거나 또는 학생의 발육에 우려 사항이 없는 데 부모 또는 다른 분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또한, 해당이 될 경우, 특정 학생의 필요에 더 적합할 수 있는 다른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부모님께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요청 전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또는 다른 교습 지원 활동을 시도하기 위해 또는 기타 다른 어떤 이유로도 상기에 기술된 평가를 받도록 요청된 학생의 평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이 필요한 특수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재평가을 받고 또한 그 특수교육을 계속해서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는 이러한 재평가를 하기 전에 항상 필요합니다.

## **4. 독립 교육 평가란 무엇인가?** **34 CFR §300.502와 603 CMR 28.04(5)**

독립 교육 평가란 (IEE) 자녀의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구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적격의 심사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뜻합니다.

부모님이 교육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부모님은 공공 비용으로 제공되는 자녀의IEE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IEE를 요청할 경우, 교육구는 IEE를 받을 수 있는 장소와 IEE 신청시 요구되는 주정부의 요건에 관한 정보를 부모님께 제공해야 합니다.

## **4.1 독립 교육 평가는 공공 비용으로 언제 진행되는가?**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주법에 따른 부모님의 소득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부모님은 전액 또는 분할된 공공 비용으로 IEE를 받게 됩니다. 무료 또는 할인 급식을 받는 학생들은 공공 비용으로 IEE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밖의 다른 학생들은 가족 소득에 따른 수수료 차등제에 따른 비용 분담 IEE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재정정보를 교육구와 공유하는 것은 완전히 부모님의 자발적인 결정입니다. 부모님께서 그러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선택하시면, 교육구는 즉시로 부모님의 전액 또는 부분적 지원 자격 여부를 부모님께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자격 여부에 따라 IEE 지원 절차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소득에 따른 자격에 의한 공공 비용 IEE에 대한 부모님의 권리는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으신 교육구의 평가일로부터 16개월 동안 연장됩니다.

부모님께서 소득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또는 부모님의 재정 정보를 밝히지 않는다면, 교육구는 부모님의 공공 비용 IEE 요청을 연방법에 따라 고려해야 합니다. 5일 이내에, 교육구는 공공 비용 IEE를 제공할 것에 동의하거나 또는 교육구의 평가는 포괄적이며 적합한 평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청문회를 특수교육항소국 (BSEA)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IEE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부모님의 지역 교육구로부터 받아 볼 수있는DESE 행정권고 2004-1과 2001-3에서 그리고 DESE 웹싸이트 http://www.doe.mass.edu/sped/advisories/?section=admin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교육구가 평가를 실시할 때마다 단 일회의 공공 비용 IEE를 받을 수 있으며, 자비로 하는 독립 평가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 **4.2 IEE 결과는 10일 이내에 교육구에 의해서 고려되야 한다**

부모님께서 공공 비용으로 자녀의 IEE를 받았거나 또는 자비로 받은 자녀의 평가를 교육구와 공유한다면, 교육구는 평가 정보를 받은 후 학교 수업일로 10일 이내에 팀 회의을 소집해야만 합니다. 팀은 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자녀의 IEP에, 필요하다면, 변경 사항을 결정할 것입니다.

## **5. 부모는 자녀의 학생기록을 언제 열람할 수 있는가?** **34 CFR 300.611**과  **603 CMR 23.00**

학생 기록은 학생의 성적표 및 일시적 학교 생활기록부로 구성되있으며 건강기록, 시험, 평가, 징계 기록 그리고 학생의 특수교육 자격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기록들이 포함되있습니다.[[3]](#footnote-3) 자녀에 관한 개인식별정보는 비밀이며 선생님들과 교육관계자들 외에는 부모님의 동의없이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자녀가 14세 이상이면) 부모님의 요청이후 10일 이내에 그리고 IEP 회의 또는 적법 절차 청문회 전에 자녀의 모든 학생기록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4]](#footnote-4) 또한 부모님이 요청하시면 적절한 복사 비용만으로 기록의 사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록을 검색하고 찾아내는 것에 관한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전문적으로 자격이있는 학교 교직원과 만나서 그 기록들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서면 사전 동의가 있으면 부모님의 대리인 (옹호자, 상담인, 또는 변호인)이 자녀의 기록을 조사, 검토, 기록 내용의 해석 등을 부모님을 대신하여 해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록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매사추세츠 학생 기록 규정 603 CMR 23.00에 기술되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http://www.doe.mass.edu/lawsregs/603cmr23.html>에서 찾아 보실 수 있고, 또는, 요청하시면, 교육구 또는 DESE로부터 규정의 사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직 부모, 자격있는 학생, 허락된 학교 교직원 그리고 주 및 연방 교육관계자들에게만 부모 또는 성인 학생의 특정 서면 사전 동의없이 학생 기록의 열람이 허용됩니다. 교육구는 법원 명령에 의하여 또는 의료 및 안전 또는 법집행 문제로 인하여 주 및 연방관리들에게 몇몇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및 기타 다른 학생 기록에 관한 사안에 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는 http://www.doe.mass.edu/lawsregs/advisory/cmr23qanda.htm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6. 부모와 학교 사이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34 CFR 300.151, 300.506 – 300.518과 603 CMR 28.08**

주 및 연방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교육 계획에 부모님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교육구가 장애학생의 장애, 평가 또는 교육 배치 등에 관한 변경, 또는 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FAPE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은 그러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교육구가 달리 동의를 하거나 또는 자녀의 교육 배치가 **징계**로 인해 변경되는 것이 아닌 한, 교육 배치 또는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자녀는 현재 받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배치된 곳에 남아 있게 됩니다.

부모님과 교육구가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대체 방법들이 있습니다 .

## **6.1 분쟁 사항을 지역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알린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써, 자녀 학교 교장,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교육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십시오. 부모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6.2 DESE 문제 해결 시스템을 이용한다**

부모님이 교육구 밖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DESE 문제 해결 시스템 사무국 (PRS)에 781-338-3700 으로 연락하셔서 <https://www.doe.mass.edu/prs/> 에 서술되있는 주 문제 해결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PRS 사무국에 주 또는 연방 교육법 위반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또는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PRS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PRS에 의한 공식 조사를 원한다면, 부모님은 서면으로 부모님의 고소 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PRS 직원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도와 줄 것입니다. 부모님의 서면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야 합니다: 부모님의 우려 사항에 관한 진술, 우려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께서 시도한 사항, 부모님의 우려 사항이 해결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교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부모님의 서명 및 연락처. 부모님의 고소 사항이 어느 특정 학생에 관한 것이라면, 부모님은 그 학생의 이름, 집주소 그리고 학교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고소하시는 문제는 PRS가 부모님의 소장을 받기 전 일년 이내에 발생한 일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문제해결시스템에 공식 소장을 접수하고자 하면, 부모님은 반드시 고소 대상인 교육구에 서면 소장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PRS는 60일 이내에 부모님의 고소 사항을 해결하여 부모님에게 그들의 조사 결과 및 결정의 사본을 보낼 것입니다.

PRS에 공식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부모님의 고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교육구와의 대화, 중재 또는 특수교육항소국 (하기에 설명)에서의 **적법 절차 청문회**와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5]](#footnote-5) 만약 부모님께서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한다면, 문제해결시스템에 접수한 소장은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보류됩니다.

## **6.3 중립적인 중재사의 지명을 요청한다.**

중재[[6]](#footnote-6)는 특수교육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중립적인 개인이 협상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중재는 고소장이 PRS 문제해결시스템에 접수됐다 해도, 부모님과 학교가 특수교육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일정이 잡힐 수 있습니다. 중재사는 부모와 교육구가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항을 논의하여 양쪽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재 동안에 논의된 사항들은 모두 비밀로 유지되며 양 당사자가 중재에서 말한 모든 내용은 후에 그 분쟁에 대한 공식 청문회 또는 법원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일단 합의에 도달하면, 그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양 당사자들이 서명하면, 그 합의는 법원에 의한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BSEA에 781-397-4750으로 연락하시면 준비될 수 있습니다. 중재가 요청된 후 30일 이내에 중재사가 부모님과 교육구와의 회의 일정을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중재를 마련할 것입니다. 중재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며 교육구와 부모 모두 중재에 참여할 것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중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중재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는 BSEA에 781-397-4750으로 연락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 또한 그들의 간행물 **“중재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Mediation)"](https://www.mass.gov/info-details/frequently-asked-questions-about-mediation-at-the-bsea)[[7]](#footnote-7) 또는 “**중재에 관한 설명(**[Explanation of Mediation](https://www.mass.gov/info-details/learn-about-mediation-at-the-bsea))[[8]](#footnote-8)”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6.4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하고 분쟁 해결 회의에 참석한다**

부모님과 교육구가 의견 차이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부모님은 중립이며 공정한 청문회 심의관이 양 당사자들의 분쟁 사항과 증언을 듣고, 증거를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BSEA가 소집하며 적법 절차 청문회라고 합니다. BSEA 청문회 심의관은 특수교육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부모님 또는 이 의견 불일치에 관련된 어느 누구와도 연관이 없는 개인 또는 전문인이어야만 합니다.

적법 절차 청문회는 자격; 평가; IEPs; 징계에 따른 교육 배치를 포함한 교육 배치 결정; FAPE; 특수교육 규정; 또는 장애학생에 관한 주 및 연방법 규정 등에 관한 분쟁을 심의합니다. 부모님은 고소 사항의 근거가된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되었거나 또는 알 수 밖에 없었던[[9]](#footnote-9)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교육구가 고소 사항을 해결한 것으로 부모님이 생각하도록 했기 때문에 또는 부모님이 필요한 특정 정보를 교육구가 부모님에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또는 교육구는 서면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10]](#footnote-10) 상대방과 같이 접수하고 청문회를 하기 위해 BSEA에 요청서 사본을 보내십시오. 부모님은 BSEA가 작성해 놓은 **청문회 신청 양식**을[[11]](#footnote-11)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편지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그 편지에는 반드시 학생의 이름과 집주소 (또는 학생이 노숙자이면 연락처); 학생의 학교 이름; 부모님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에 관련된 특정 사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 제안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고소장에 기술된 사항만을 다룬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부모님은 부모님의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서를 교육구 (또는 고소 대상인 상대방)에 그리고 그 사본을 BSEA에 보내셔야 합니다. 만약 적법 절차 소장에 충분한 정보가 기술되 있지 않으면, 상대방은 15일 이내에 근거 *불충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BSEA는 이의 제기 후 5일 이내에 소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또는 심의관이 허락한다면, 소장에 추가 정보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첨가된다면, 청문회 일정은 모두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소장의 근거 불충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으면, 청문회 절차는 진행됩니다. 교육구가 부모님이 고소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부모님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이미 보내지 않았다면, 교육구는 부모님의 적법 절차 청문회 신청서를 받은 후 역일로 1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서면 답변을 부모님에게 보내야만 합니다.

**주:** 만약 *교육구*가 적법 절차 청문회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부모님은* 청문회 신청서를 받은 후 역일로 10일 이내에 답변을, 특히 교육구가 제기한 문제에 관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접수한 후, 교육구는 적법 절차 청문회가 개최되기 전에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와 협상할 수 있는 30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12]](#footnote-12)

교육구는 부모님의 적법 절차 소장을 받은 후 역일로 15일 이내에 분쟁해결 회의를 마련해야 합니다.[[13]](#footnote-13) 교육구는 부모님과 함께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IEP 팀의 구성원들을 결정합니다. 자녀의 프로그램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구 직원이 회의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교육구 변호인은 부모님의 변호인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한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교육구가 회의를 하지 않는 것에 서면으로 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또는 부모님과 교육구가 **중재 절차**를 이용할 것을 결정하지 않는 한, 부모님은 반드시 분쟁해결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분쟁해결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청문회는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은 참석할 용의가 있는데, 교육구가 분쟁해결회의를 거절하거나 또는 부모님의 청문회 요청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상을 지연시킨다면, 부모님은 청문회 심의관에게 청문회 절차를 진행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참여했지만, 부모님이 소장을 접수시킨 후 30일 이내에 적법 절차 고소 내용을 교육구가 부모님에게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적법 절차 청문회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절차는 아래와 같은 사건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종료됩니다:

* 부모님과 교육구가 분쟁기간 종료를 서면으로 동의했을 때;
* 30일간의 분쟁기간 종료;
* 중재 종료; 또는
* 부모님과 교육구 책임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동의 내용을 기술한 서류에 서명했을 때. 이 서류는 “분쟁해결 합의서”이며 주 또는 연방법원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교육구가 분쟁해결회의 결과로써 합의를 했다면, 부모님 또는 교육구는 부모님과 교육구가 합의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업무일로 3일 이내에 합의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십시오.

## **6.5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공정한 청문회 심의관에게 학부모의 증거를 제시한다.**

부모님이 적법 절차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 BSEA는 청문회 날짜를 정하고 심의관을 배정하며 부모님에게 청문회 절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부모님이 도움을 받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무료 또는 저렴한 변호인과 옹호자들의 목록을 보내 줄 것입니다.

적법 절차 청문회 동안, 부모님과 교육구는 각각 BSEA의 공정한 청문회 심의관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들의 증언을 제공합니다. 징계 절차와 관련된 청문회를 포함한 모든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부모님은:

* 변호인 및/또는 옹호인을 동반하고, 조언을 얻고 또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문회에 자녀를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 공개 청문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문서 및 보고서와 같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소환장을 통하여 증인들이 청문회에 참석하여 질문에 대답을 하도록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문회에서 사용될 모든 증거물을 적어도 심의전 업무일로 5일 전에 미리 볼 수 있으며 부모님께서 미리 보지 않은 모든 증거는 청문회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심의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부모님이 원하시면, 청문회의 심의 사실에 관한 판정 및 결정에 관한 축어적 서면 또는 전자 기록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청문회의 서면 기록을 받아 보려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청문회에 관한 추가 정보는 BSEA에 781-397-4750으로 연락하여 받거나 BSEA 웹싸이트 http://www.mass.gov/dala/bsea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매사추세츠 행정절차법과**[[14]](#footnote-14)** BSEA [**청문회 규정**에](https://view.officeapps.live.com/op/view.aspx?src=https%3A%2F%2Fwww.mass.gov%2Fdoc%2Fhearing-rules%2Fdownload&wdOrigin=BROWSELINK)**[[15]](#footnote-15)** 따라 진행됩니다. 심의관이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시한 연장을 허락하지 않는 한, 청문회 심의관은 상기에 기술된 분쟁해결 기간의 종결 후 45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심의관은 부모님과 교육구에 결정문의 사본을 우송합니다. 부모님과 교육구는 모두 심의관의 결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자녀가 FAPE를 제공 받았는지에 관한 심의관의 판정은 특수교육을 받을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또는 특수교육법 및 규정하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구의 다른 의무를 교육구가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결정에 근거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소장에서 교육구가 특수교육절차를 위반 (적합한 팀 회의 소집 실패, 빈약한 기록 유지, 또는 예정된 진행 시간표 준수 불이행 등과 같은)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심의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녀가 FAPE를 받지 못했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FAPE 받을 자녀의 권리에 지장 초래;
	+ 자녀 교육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모님의 기회에 심각한 지장 초래; 또는
	+ 자녀의 교육 혜택이 박탈되었다.

심의관의 판정은 최종 결정으로서 BSEA에 의해서 재고려되거나 또는 DESE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습니다. 청문회 판정은 공개되며[[16]](#footnote-16) BSEA 웹싸이트 https://www.mass.gov/bsea-decisions-and-ruling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6.6 주 또는 연방법원에 청문회 판정 항소**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심의관의 판정에 불복하면, 주 또는 연방법원에서 그 판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검토 요청은 판정이 내린 이후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6.7 변호비 34 CFR §300.517**

법원이 달리 판결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자신의 변호비를 각각 부담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청문회의 서면 판정 또는 법원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법원은[[17]](#footnote-17) 교육구가 부모님에게 적절한 변호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교육구가 합의 제안을 한 후에 부모님이 소송 사건을 진행하는 데 사용한 시간에 대한 비용은 받지 못합니다.

* 청문회 개시 10일 이상 전에 교육구가 서면 합의 제안을 했을 경우,
* 10일 이내에 부모님이 그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 청문회 결과가 그 합의 제안보다 더 낫지 않은 경우.

만약 교육구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부모님의 변호인이 소송이 사실상 근거가 없고, 비합리적이며, 하찮은 소송 또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을 알게된 후에 소송을 접수했거나 또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시켰다고 법원이 결정하면, 법원은 부모님의 변호인에게 교육구의 소송 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 또는 쓸데없이 소송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적법 절차 청문회 또는 후속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부모님 또는 부모님의 변호인에게 교육구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7**. **부모가 자녀를 사립학교에 입학시키고 교육구가 수업료를 환불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학부모의 책임은 무엇인가?**

## **34 CFR §300.148**

때때로 부모님이 공립학교가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믿고 자녀를 사립학교에 입학시키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든지 자비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교육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님은 반드시 교육구에 자녀의 IEP와 그 프로그램에 반대를 표명하고, IEP를 거절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전학시킬 의도를 학교에 알리며, BSEA에 의한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공립학교로부터 전학시키기 전 마지막 팀 회의에서 구두로 또는 전학시키기 전 적어도 업무일로 10일 전에 서면으로 교육구에 통보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자녀에게 FAPE를 제공했다면 교육구는 자녀가 사립학교를 다니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의 프로그램이 FAPE를 제공하고 있는 지 그리고 부모님이 사적 프로그램 비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부모와 교육구와의 분쟁은 본 문서 상기에 기술된 적법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심의관이 교육구가 자녀에게FAPE를 제공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심의관이 교육구가 자녀에게FAPE를 제공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상기의 절차를 밟았으며, 그리고 사립학교에 배치가 적절했다고 판정하면, 심의관은 학생의 전학에 둘러싼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교육구가 사립학교 배치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님에게 환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8.** **고등학교 졸업 후 자녀의 전환기에 관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야 하는가? 34 CFR §300.43**

학교 졸업후 자녀의 다음 단계로의 전환기를 위한 계획은 고등교육과정, 직장 그리고 사회 및 성인으로서의 생활과 같은 활동에 자녀가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자녀의 능력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전환기 계획은 반드시 자녀의 강점, 선호, 관심 및 필요에 근거하여, 자녀가 14세가 될 때부터 시작되야 하며, 또한 팀 회의에서 매년 논의되야만 합니다. 교육구는 자녀의 전환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부모님과 자녀와[[18]](#footnote-18) 같이 논의해야 하며 자녀가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여 고등학교 과정을 끝마친 후 또는 22세가 된 후에 목표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교육구는 **전환기 계획 양식**[[19]](#footnote-19)을 사용하여 이러한 연례 상담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자녀의 IEP에는 학생의 장애 및 전환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적절한 평가에 근거하여 측정 가능한 고등교육 전환기 목적, 목표 그리고 서비스 등이 포함되야만 합니다.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여 졸업한다는 것은 교육 배치의 변경과 학생의 특수교육 자격이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구는 자녀가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졸업할 지 그리고 자녀의 졸업 예상 시기를 부모님에게 통보해 줘야만 하는데, 이러한 사항에 관한 논의는 적어도 자녀의 졸업 1년 전에 팀 회의에서 논의되야 합니다.

## **9. 학교는 장애학생을 어떻게 징계하는가? 34 CFR §300.530**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행동 규칙을 발행하여, 고등학교에서는 반드시 발행해야 함, 학교에서 학생들부터 기대하는 행동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이 품행을 나쁘게 행동하거나 학교 행동규칙을 위반한다면, 학교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은 징계 조치로 10일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정학 또는 퇴출될 수 있습니다. 퇴출 또는 정학 조치 전에, 학생에게 자신이 어떤 행동으로 처벌 받는 지를 알려줘야 하며 또한 학생에게 자신의 얘기도 할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짧은 기간의 징계 퇴출 동안, 학교는, 비장애 학생에게 제공되지 않는 한, 장애학생에게 교습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학생이 일단 한 학년기간 동안 총 10일 이상 수업 배치에서 퇴출되면, 학생은 일반 교과과정에 계속 참여하여 학생의 정해진 IE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전할 수 있도록 교습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 교직원들은 학생에게 어떤 교습이 필요한 지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의 선생님들 중 적어도 한 명과 상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교습은 학년기간 동안 학생이 징계 퇴출된지 11번째 수업일부터 시작되어 징계기간 동안 지속되야 합니다.

학교는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판정된 장애학생들에 관한 특별 징계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20]](#footnote-20) 이러한 징계규칙 운영이 서술된 도표는 DESE 웹싸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1]](#footnote-21) 이러한 특별 징계규칙은 학생이 현재 교육 배치에서[[22]](#footnote-22) 수업일로 연속 10일 이상 퇴출 조치를 받는 즉시, 또는 학생이 한 학년도에 징계 조치일을 합쳐 총 10일 이상 퇴출되었을 경우 그리고 유사한 행동유형으로 퇴출 조치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녀가 교육 배치에서 10일 이상 퇴출 조치된다는 결정이 되는 즉시 학교는 본 통지의 사본과 함께 부모님에게 통보해야만 합니다.

자녀의 IEP팀은 학교의 징계처분 집행 결정 후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원인규명결정*”이라 불리는 이 회의에서, 부모님과 IEP 팀의 다른 구성원들은 자녀의 문제가 되는 행동이 자녀의 장애로 인한 것인지 또는 장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또는 학교에 의한 자녀의 IEP 서비스의 불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동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원인규명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부모님과 IEP 팀의 다른 구성원들은 학생 파일에 포함된 관련 정보, IEP,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학생 행동 관찰 그리고 부모님이 제공하는 다른 관련 정보 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팀이 학생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로 인하여 또는 그 장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또는 IEP의 적절한 실행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장애학생은 다른 비장애학생들이 같은 문제의 행동에 대해 받는 같은 기간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징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EP팀은 학생이 배치되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임시대체교육장소 (IAES)를 결정해야 합니다. IAES는 학생이 현재 배치된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학생의 IEP에 따른 교육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학교 교직원은 배치 변경이 장애학생에게 적절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학생의 독특한 상황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팀이 학생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로 인하여 또는 그 장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또는 IEP의 적절한 실행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부모님과 IEP 팀이 다른 배치를 결정하지 않는 한 학생은 마지막으로 승인됐던 IEP 교육 배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학생에게는 또한 기능적 행동 평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 또는 FBA는 IEP 팀에게 학생의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위반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처하기 위해 고안되는 행동 개입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수정 사항 등을 식별하여 주는 학생의 행동에 관한 포괄적인 평가입니다. 만약 학생이 이미 기능적 행동 평가를 받아서 행동 개입 계획이 세워졌다면, IEP 팀은 행동 개입 계획에 어떤 사항이 변경되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의 행동이 IEP가 적절하게 실행이 안됨으로써 초래됐다면, 학교는 그 부족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무기 또는 약물을 소지 또는 사용했다면, 또는 학교 구내에서 또는 학교 행사에서 다른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혔다면, 그 행동의 원인이 학생의 장애라고 하는 원인 규명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은 교장에 의해서 수업일 45일까지 IAES에 배치된다는 것을 주지해 주십시오. 학생이 IAES에 배치되있는 동안 IEP 팀이 학생에게 제공할 IAES와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결정할 것입니다.

## **9.1 징계 결정의 항소**

만약 부모님이 징계규정에 따른 자녀의 교육 배치 결정 또는 원인 규명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또는 만약 교육구가 학생의 현재 배치를 유지할 경우 학생 자신 또는 다른 학생들에게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면, 부모 또는 교육구는 본 문서의 상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BSEA에 **청문회를 요청하여** 그 결정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BSEA는 징계에 따른 배치 또는 원인 규명 결정에 관한 청문회 일정을 신속하게 잡아 소집합니다. [[23]](#footnote-23) 징계에 따른 배치 또는 원인 규명 결정에 관한 청문회 기간 동안, 부모와 교육구가 다른 교육 배치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학생은 청문회 심의관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또는 징계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IAES에 남아 있게 됩니다.

## **10. 관련 법률 및 규정 그리고 기타 유용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는가?**

## **10.1 법률 및 규정**

부모님은 매사추세츠 일반법 제71B편에서 주 특수교육법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주법은 일반적으로 “챕터 766”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 특수교육 규정은 매사추세츠 주 규정집 (CMR)의 603 CMR 28.0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과 규정들 그리고 기타 유용한 자료들은 DESE 웹싸이트에 게재되있습니다. [[24]](#footnote-24)

연방 특수교육법은 “IDEA”로 알려진 장애인교육법입니다. 이 연방법은 연방법전 20 U.S.C. § 1400에 기술되 있습니다. IDEA의 시행 규정들은 연방규정집 (CFR) 제34편 300조에 기술되 있습니다. 연방법 및 규정의 사본 그리고 그 설명 정보는 미연방 교육부 웹싸이트 http://idea.ed.gov/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10.2 개별교육프로그램 진행 안내 및 양식**

특수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는 (USDOE가 작성한 IEP 안내에서 발췌) http://www.doe.mass.edu/sped/iep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IEP는 어떻게 개발되는가에 관한 DESE의 설명은 DESE 웹싸이트 http://www.doe.mass.edu/sped/iep에서 보실 수 있는 IEP 진행 안내 및 기본 IEP 양식들을 참조하십시오.

## **10.3 약어 목록**

흔히 사용되는 많은 특수교육 용어들이 첫 글자로만 구성된 두문자어로 축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리를 위해 본 문서에서 사용된 두문자어들을 아래와 같이 목록했습니다:

BSEA: Bureau of Special Education Appeals (특수교육항소국)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규정집)

CMR: Code of Massachusetts Regulations (매사추세츠 주 규정집)

DESE: Massachusetts 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매사추세츠 초중등 교육부)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적절한 무상 공교육)

FBA: 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 (기능적 행동 평가)

IAES: Interim Alternative Educational Setting (임시 대체 교육 장소)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장애인 교육법)

IEE: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독립 교육 평가)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개별 교육 프로그램)

PRS: Problem Resolution System (문제 해결 시스템)

## **10.4 웹싸이트 목록**

DESE는 학부모와 교육구를 위해 광범위한 정보를 자체 인터넷 웹싸이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웹싸이트에는 특수교육 절차를 설명하는 관련 법률, 기관 정책 및 기타 유용한 문서들이 포함되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http://www.doe.mass.edu/sped/advisories/07\_1ta.html

특수교육 항소국 (BSEA - Bureau of Special Education Appeals)

https://www.mass.gov/bsea-decisions-and-rulings

[http://www.mass.gov/anf/docs/dala/bsea/hearing-rules.doc](https://www.mass.gov/doc/hearing-rules/download)

http://www.mass.gov/anf/hearings-and-appeals/bureau-of-special-education-appeals-bsea/mediation/

[http://www.mass.gov/anf/docs/dala/bsea/mediation-brochure-2012.doc](https://www.mass.gov/doc/bsea-mediation-brochure/download)

[http://www.mass.gov/anf/hearings-and-appeals/bureau-of-special-education-appeals-bsea/mediation/mediation-faqs.html](https://www.mass.gov/info-details/frequently-asked-questions-about-mediation-at-the-bsea)

 [http://www.mass.gov/anf/docs/dala/bsea/](https://www.mass.gov/info-details/learn-about-mediation-at-the-bsea)

매스헬스 (메이케이드) 혜택 신청 동의서:

 http://www.doe.mass.edu/sped/advisories/13\_1.html

 http://www.doe.mass.edu/sped/28mr/**28m13**.docm

징계:

 [http://www.doe.mass.edu/sped/IDEA2004/spr\_meetings/disc\_chart.doc](https://www.doe.mass.edu/sped/advisories/discipline/disc-chart.docx)

장애인 교육법 (IDEA -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http://idea.ed.gov/.

IDEA에 따른 특수교육 기본 절차:

 http://www.doe.mass.edu/sped/iep/process.doc

개별 특수교육 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http://www.doe.mass.edu/sped/iep

개별 특수교육 프로그램 절차 안내:

 http://www.doe.mass.edu/sped/iep/proguide.pdf

독립 교육 평가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http://www.doe.mass.edu/sped/advisories/?section=admin

평가 목적을 위한 학부모 및 학부모의 피지명인의 교육 프로그램 관찰:

http://www.doe.mass.edu/sped/advisories/09\_2.html

학부모의 절차적 보호에 관한 통지:

http://www.doe.mass.edu/sped/prb.

BSEA의 적법 절차 소송과 PRS의 문제 해결 시스템의 비교:

[http://www.doe.mass.edu/sped/complaintchart.doc](https://www.doe.mass.edu/prs/guide/default.html)

문제해결 시스템의 양질보증서비스 프로그램 (PQA - Program Quality Assurance Services Problem:

 http://www.doe.mass.edu/prs/

특수교육법 및 규정:

 http://www.doe.mass.edu/sped/laws.html

특수교육 대리부모:

 http://www.doe.mass.edu/sped/advisories/2013SurrogateParent.html

특수교육 전환기 계획 양식:

 http://www.doe.mass.edu/sped/28MR/28m9.docx

학생 기록에 관한 규정:

 http://www.doe.mass.edu/lawsregs/603cmr23.html

학생 기록에 관한 질의 응답

http://www.doe.mass.edu/lawsregs/advisory/cmr23qanda.html?section.

전환기 계획:

http://www.doe.mass.edu/sped/cspd/mod4.html#

1. 학생의 IEP가 어떻게 개발되고 수행되는 가에 관한 정보는 IEP 진행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footnote-ref-1)
2. 부모님은 자녀가 받고 있는 현 프로그램에서 자녀를 관찰할 권리 그리고 자녀가 프로그램에 배치되기 전에 제안 받은 프로그램에서 관찰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학부모의 교육 프로그램 관찰”이라는 DESE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footnote-ref-2)
3. 특수교육 서비스가 최초로 시작된 후에 부모님이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면, 교육구는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학생 기록을 수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footnote-ref-3)
4. 교육구는 학생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제한하는 접근금지명령 또는 이혼 또는 양육권 명령 등과 같은 법적 서류를 받았을 경우에만 학생기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footnote-ref-4)
5. 문제해결시스템에 의한 고소 해결 방법과 적법 절차 청문회에 의한 고소 해결 방법의 비교는 http://www.doe.mass.edu/sped/docs.html를 참조하십시오. [↑](#footnote-ref-5)
6. 중재 절차에 관한 설명은 DESE Web site http://www.mass.gov/anf/hearings-and-appeals/bureau-of-special-education-appeals-bsea/mediation/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footnote-ref-6)
7. [http://www.mass.gov/anf/hearings-and-appeals/bureau-of-special-education-appeals-bsea/mediation/mediation-faqs.html](https://www.mass.gov/info-details/frequently-asked-questions-about-mediation-at-the-bsea). [↑](#footnote-ref-7)
8. [http://www.mass.gov/anf/docs/dala/bsea/mediation-brochure-2012.doc](https://www.mass.gov/info-details/learn-about-mediation-at-the-bsea) [↑](#footnote-ref-8)
9. “또는 알 수 밖에 없었던” 이라는 표현은 부모님이 자녀의 프로그램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부모님의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footnote-ref-9)
10.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에 관한 정보는http://www.mass.gov/anf/hearings-and-appeals/bureau-of-special-education-appeals-bsea/due-process-hearing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footnote-ref-10)
11. https://www.mass.gov/doc/hearing-request-form/download [↑](#footnote-ref-11)
12. 학부모와 교육구가 중재를 하기로 동의했다면, 학부모는 30일 기간 후에도 중재를 계속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footnote-ref-12)
13. 교육구가 적법절차청문회를 요청했다면, 분쟁해결회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footnote-ref-13)
14. M.G.L. c.30A [↑](#footnote-ref-14)
15. [http://www.mass.gov/anf/docs/dala/bsea/hearing-rules.doc](https://view.officeapps.live.com/op/view.aspx?src=https%3A%2F%2Fwww.mass.gov%2Fdoc%2Fhearing-rules%2Fdownload&wdOrigin=BROWSELINK). [↑](#footnote-ref-15)
16. 청문회 판정문은 학생의 신분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지운 후에 공개됩니다. [↑](#footnote-ref-16)
17. 청문회 심의관은 변호비 지불 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ootnote-ref-17)
18. 학생은 고등교육 목표 및 전환기를 논의하기 위해 팀 미팅에 참석토록 초청되야 합니다. [↑](#footnote-ref-18)
19. http://www.doe.mass.edu/sped/28MR/28m9.docx [↑](#footnote-ref-19)
20. 특수교육 징계규칙은 특수교육 자격 판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약, 문제가 되는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부모님이 자녀가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부모님의 우려를 서면으로 감독교원 또는 행정교원 또는 자녀 선생님에게 표명했을 경우; 선생님 또는 다른 교직원이 자녀의 행동유형에 관한 우려를 특수교육부 부장 또는 다른 감독 교직원에게 표명했을 경우, 또는 자녀가 평가를 받도록 되있는데 아직 그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이 특수 징계 규칙은 적용됩니다. 특수교육 징계 규칙은 부모가 평가 받는 것에 동의를 거부했을 경우, 자녀가 전에 특수교육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을 경우, 또는 부모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footnote-ref-20)
21. http://www.doe.mass.edu/sped/IDEA2004/spr\_meetings/disc\_chart.doc [↑](#footnote-ref-21)
22. 교육 배치는IEP 팀에 의해서 결정되며 IEP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입니다. [↑](#footnote-ref-22)
23. 신속한 청문회에 관한 정보는 [http://www.mass.gov/anf/docs/dala/bsea/hearing-rules.doc 7](http://www.mass.gov/anf/docs/dala/bsea/hearing-rules.doc%207)쪽, BSEA 청문회 규칙 II.C를 참조하십시오. [↑](#footnote-ref-23)
24. http://www.doe.mass.edu/sped/laws.html [↑](#footnote-ref-24)